

의안번호	2218791
의 퇴 인	임종득의원
회 답 일	2026.8.6.
추계번호	26D243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이연금 심의 신청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5,300만원, 2031년 1,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억 1,500만원(연평균 6,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상이연금 심의 신청 특례 (안 제27조의3 신설)	253	15	15	16	16	315	63

주: 1. 상이연금 심의 신청 특례(안 제27조의3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개정안의 취지와 국방부에서 확인한 사례를 근거로 2006년에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상이연금 신청이 기각된 대상자 1명이 개정안에 따라 상이연금 심의 신청 특례 대상자가 되어 2027년에 상이연금 소급분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2027년 1월부터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의3 (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신설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 시 상이연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현행법은 누락·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7조의3 (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은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상이연금¹⁾을 받지 못함
- 개정안은 중요사항의 누락·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하여 인정받는 경우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국방부가 확인한 지급대상자 1명을 기준으로 하며, 현행법상 사유발생일부터 5년 내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개정안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예외로 보아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제안 배경이 된 대상자는 1명이고 개정안 제 27조의3제4항에 따라 상이연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①사유발생일(2006년 11월)부터 2026년까지의 소급 상이연금 일시금²⁾과 ②2027년 이후의 정기 상이연금으로 구분함
 - 이때, 소급 일시금은 2027년에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1) 상이연금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상이등급별로 지급하는 급여임

2) 소급 지급 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가데이터처의 실적치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³⁾
- 개정안 부칙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상이등급을 새로 인정받은 군인에게 지급하는 ①소급 상이연금 일시금과 ②2027년 이후 정기 상이연금으로 구분됨
- ①소급 상이연금 일시금은 사유발생일(2006년 11월)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상이연금월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2006년은 11~12월분), ②정기분은 연도별 지급대상자 수 × 월 상이연금액 × 12개월로 산출
 - (소급 상이연금 일시금) 2027년 2억 3,800만원으로 추정
 - 대상자의 2026년 기준 월 상이연금액은 1,199,450원이며, 과거 연도별 월액은 상이연금 인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역산하여 산정함
 -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가데이터처 실적, 2020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적용
 - (정기 상이연금) 2027년 1,500만원, 2031년 1,600만원으로 추정
 - (대상자 수)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국방부가 확인한 대상자 1명이 2027년부터 정기 상이연금을 지급받으며, 추계기간 동안 계속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상이연금월액) 2027년 123만원, 2031년 133만원으로 추정⁴⁾

3) 소급 상이연금 일시금 계산을 위한 2006년부터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적치는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의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2026년부터의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6.3) 적용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3%	2.0%	2.0%	2.0%	2.0%	2.0%

4) 국방부에 따르면, 대상자의 월 상이연금액은 2026년 기준 1,199,450원이고, 상이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므로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활용하여 추정

[표 2] 정기 상이연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지급대상자 수 (a, 명)	1	1	1	1	1	—
월 상이연금액(b, 만원)	123	125	128	130	133	—
추가재정소요 (=a×b×12개월, 백만원)	15	15	15	16	16	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상이연금 심의 신청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5,300만원, 2031년 1,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소급 상이연금 일시금	238	—	—	—	—	—
정기 상이연금	15	15	15	16	16	77
합계	253	15	15	16	16	3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방부가 확인한 대상자 1명을 기준으로 소급분(사유발생 일~2026년, 국가데이터처 물가 역산)과 정기분을 산정한 결과로, 국방부의 연도별 실제 지급단가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